

##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학습자 안내 사항

### 1. 모집인원: 각 반별 30명

### 2. 지원 자격: 선수과목 이수 완료자

- 사회복지현장실습: 필수4과목 + 선택2과목 이상 이수 완료한 학습자

<b>필수과목 (4과목 이상)</b>	사회복지개론(사회복지학개론)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(사회복지법제와실천)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
<b>선택과목 (2과목 이상)</b>	아동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노인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 여성복지론, 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산업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의료사회복지론(의료사회사업론), 학교사회복지론(학교사회사업론), 정신건강론, 교정복지론, 사회복지장론, 사회문제론, 자원봉사론, 정신보건사회복지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프로그램개발과 평가, 사회복지역사(사회복지발달사)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

### 3.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및 안내사항

-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실습 가능기관 확인방법: [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(<http://lic.welfare.net>) 또는 첨부파일 3번]에서 확인 가능함.
- 실습 기관을 개인적으로 선정하지 못하신 분은 본원과 협약된 기관으로 실습 연계가 가능하니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(대구 시내, 주중 실습만 가능)
- 실습기관의 지도비는 본인이 부담하며, 개강 전에 실습기관을 미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실습기간 및 시간 (정해진 기간 외에는 실습이 불가능합니다.)
  - 실습 기간 : **각 반별 첫 수업 이후(개강 수업 전 실습 인정 안됨) - 5. 31.(금)까지 완료**
  - **3월 4일(월) 실습을 시작하실 분은 실습신청서를 2월 28일(수)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.**
  - **3월 11일(월) 실습을 시작하실 분은 실습신청서를 3월 6일(수)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.**  
(실습은 실습신청서 제출 및 공문 발송 후 가능합니다.)
- 실습은 120시간 또는 160시간 직접 실습만 가능합니다.
- 실습 가능 지역 : 대구, 경북, 경남, 울산(그 외 지역은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- 실습 유의 사항
  - 실습 가능 지역을 제한한 것이므로 거주지 지역과는 무관합니다.
  - 근무지 내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(동일 법인 산하에서 실습하는 경우도 포함)
  - 출석 수업일에 실습은 불가능합니다.
  - 주말에 실습하실 분은 실습지도자가 주말에 근무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선착순이더라도 본원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불일치 시 선발하지 않으며 선발 이후에도 실습기관 지역 제한 등 자격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.
 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시 자료 배부합니다.

4. **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각 반별 개강일에 실시(예정) :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기타 문서 서식과 관련하여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**  
(평생교육원 홈페이지 → 게시판 → 서식자료실 참고)
5. 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증 신청 업무는 개별적으로 기간 및 방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6. 강의실(세미나)수업 출석률 80% 미만일 경우 현장실습 완료와 상관없이 F처리 됩니다.
7. **학습비(수업료) 환불은 개강 전 100% 환불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평가인증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[별표]에 의거하여 환불 됩니다.**

[별표]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제2항 관련)

반환 사유	반환 사유 발생 시점	반환 금액
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		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	수업 시작일 전일까지	학습비 전액
	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	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	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	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	반환하지 않음

- 수업료 환불은 실습 시작과 관계없이 수업 시작 후부터 적용됩니다.
- 개강 전까지 실습기관을 정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셔서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